

의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위원회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하는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위원회는 7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 한다)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(이하 “학생부원장”이라 한다)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 중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장(이하 “학생부장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 중 1인은 학생대표로 하며, 학생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며, 그 심의를 돕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재학생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의 실무위원회(또는 실행위원회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①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② 학생자치기구 및 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

③ 외부인사 학내초정에 관한 사항

④ 동아리구성 및 학생활동을 위한 후원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

⑤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

⑥ 학생 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

⑦ 학생 소명 기회에 관한 사항

⑧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
제5조(소집 및 회의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하여 결정한다.

2-3-16~2 제3편 행정

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, 학년지도교수 및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다만, 사전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6조(회의결과의 공개) 위원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들이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기타사항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